

#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2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성평등정책위원회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
-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성평등촉진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
-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

## 주요내용

- 성평등정책위원회 존속기한을 2023. 12. 31.에서 2028. 12. 31.로 연장  
(안 제8조의2)
-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을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」  
으로 변경(안 제25조)
- 기금 존속기한을 2023. 12. 31.에서 2028. 12. 31.로 연장  
(안 제35조)

## 개정 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##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사전예고(결과) : 【붙임 4】

- 입법예고 : 2023. 6. 2. ~ 2023. 6. 23. (21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**[붙임 1]**

## **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8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3조” 를 “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3조” 로 한다.

제35조제3항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8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#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8조의2, 제35조제3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여성가족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여성가족과장 박 종 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여성정책팀장 임 은 경
	담 당 자 성명·전화	노 자 연 (행정 2264)

**[붙임 2]**

**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안
제8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.	제8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.
제25조(경제활동 참여촉진)① (생 략) ② 시장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	제25조(경제활동 참여촉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「 <u>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</u> 」 제3조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35조(기금의 설치 등) ①·② (생 략) 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	제35조(기금의 설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.